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7 | 2024.12.30 (2024.12.23~12.2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23~12.2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방한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 지원, 관광시장 활력 부여, 지역관광 인프라 확장, 관광콘텐츠와 산업의 확장,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확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명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3인)**」,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회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7인)」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12.31.14:00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와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운영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에서 법안 심사와 현안 질의가 개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7
-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국무조정실)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4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1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 신장식의원 · 한창민의원 등 24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3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2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3
•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2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6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7
•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7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9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30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1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3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3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3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33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33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23~12.29) [바로가기](#)

- **[ESG]** 금융위원회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FIFA의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 축구선수 이적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금융]** 금융기관 제재 시 사후적 경합에 따른 감면이 인정됩니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6 (2024년 12월 4째주)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 제시
- **[건설/부동산]**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방송통신(TMT)]**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 및 대응 필요성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 -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 확대 -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 유도	2024-12-23
-------	---	------------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공 공사비 현실화

-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
-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
-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
-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
-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② 민자사업 활성화

-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10.2일 민자 활성화 방안)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최대 0.5조원 투자효과) 할 예정
-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

③ 신속 착공 지원

- 정상사업장은 PF보증 확대(35→40조원), 책임준공보증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비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을 지원
-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
-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제도 강화

④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
-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

⑤ 투자여건 개선

-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
-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5년 한시)하여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
-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5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
-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24.12~)를 통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
-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32→11개로 통합·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25.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
-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수준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

국무조정실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관광시장 활력: 관광 예산(1.3조원) 70%(0.94조원) 상반기 집행,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 지원, E-9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
- 방한편의 제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면제 연장,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연장, '관광통역안내 1330' 24시간 운영, 외국어 지도·예약·결제 서비스 확장
- 지역활력 촉진: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 구축, 인구감소 지역 대상 관광교통 촉진지역 지정

2024-12-26

정부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임.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음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방한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 지원

-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
-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 개선
- 방한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2025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하고,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25년 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 주력

② 관광시장 활력 부여

-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
-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25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
-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

③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확장

-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지정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신규 교통망을 확충

④ 관광콘텐츠와 산업의 확장

-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들어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소비재(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와 서비스업(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
-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하여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

⑤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확장

-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
-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
-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할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24 시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	-------------------------	------------------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품·유통포장재 등의 순환이용 및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 또는 유통사업자 중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사업자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2-23 시행
-----	--------------------------	---------------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발생감량률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별로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순환자원의 이물질·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분석결과서는 이물질·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허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쓰는 경우 및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24 시행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 자산 산정 방법을 조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작성·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전환하고, 합병 등을 통한 자산관리회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주주의 결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24 시행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
에게 부과·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27. ~2025.02.05.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등을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시행령안 제377조의2, 규정안 제19조, 제28조의2, 제36조, 제38조, 제39조)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가 수행할 절차,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지급정지 해제 결정시 절차 등 규정
- ②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시행령안 제377조의3, 규정안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 2의4, 별표3)
 -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부과 요건 및 그 제한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되는 거래 및 관련 절차·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 규정
- ③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 (시행령안 별표5)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지급정지 조치 불이행,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거부 불이행 등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직무정지·주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 ④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처리 권한 부여 (시행령안 제387조의2)
 -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사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⑤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시행령안 별표20)
 - 지급정지 조치 관련 금융회사 통지의 접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시행령안 별표20의2, 별표22, 규정안 별표2의2)
 - 법률상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도록 개선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12.09.
~2025.01.20.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사·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 (안 제22조)

-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②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 (안 별표1)

-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전화: 02-2100-1666, 팩스: 02-2100-1682\)](tel:02-2100-1666)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12.23.
~2025.02.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추가 (안 제27조제4항 신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전화: 044-204-7924, 팩스: 044-204-7989\)](tel:044-204-7924)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23.
~2025.02.0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 (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 문의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tel:044-201-702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2.23.
~2025.01.09.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조회 및 시·도경찰청장 등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위한 서식 신설 (안 제7조의3 신설, 별지 제10호의3서식부터 제10호의6서식까지 신설)
- ②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7, 팩스: 044-201-5601\)](tel:044-201-4157)

국토교통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4.
~2025.02.03.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검사기관 간 유효기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잔류조사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항생물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제1항제12호)
- ②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안 제64조제4항)
- ③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64조제7항 및 제8항)
- ④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점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 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 ⑥ ‘검사성적서’를 ‘결과통보서’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65조제1항제3호)
- ⑦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잔류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http://www.mfds.go.kr) (전화: 043-719-3213, 팩스: 043-719-32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12-23 발의
-------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4제3항)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2024-12-24 발의
-------	---	---------------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2024-12-24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포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 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 신장식의원 · 한창민의원 등 24인)

2024-12-24 발의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또는 분할·분할합병 등의 주요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나 성과주식 배정 등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사안에 이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거나 개미투자자가 대거 해외 자본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각 사안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배정 등의 주주보호 조치와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가격 등을 정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함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 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사례와 같이 기업인수 시 지배주주 소유의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 일반주주의 주식은 헐값으로 인수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새로운 지배주주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함** (안 제133조의2)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사례와 같이 건설한 사업·재무구조를 가진 주식상장법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계열사와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지배주주나 재벌 기업집단과 달리 장기투자하고 있던 일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과반수 결의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합병비율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안 제165조의4제2항, 제165조의5제3항)**

미래 유망성장산업인 2차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상장하여 미래 유망성장사업을 잃은 모회사 주식가치가 떨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례와 같이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물적분할에 의한 설립된 것 포함)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상장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안 제165조의7제4항)**

내부 이익잉여금 상당히 유보되어 있고 매년 흑자를 내는 주식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인이 주식상장법인을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신성통상 사례와 같은 상장폐지 시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상장법인을 인수한 자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 (안 제141조제3항)**

지나치게 낮은 할인율로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주주는 주식가치 희석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유상증자 전 주식 처분 등의 대응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사례와 같이 일반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요일 저녁에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시 주가가 폭락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거나, 고려아연 지배권 분쟁 시 유상증자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확대 목적으로 저가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하며,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제161조제1항)**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최초 전환가격 보다 낮춰 행사(최대 70%까지 낮추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위 refixing)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일반주주는 주가가 희석되어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안 제165조의10제3항 및 제4항)**

지배주주가 임원을 담당하는 경우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여 주식상장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식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보수의 원칙과 목표, 보수 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의 “보수정책”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보수정책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보수는 무효로 반환하도록 함 (안 제165조의21)**

위와 같은 기업 인수·합병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상장,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등 지급 사안 외에도, 주권상장법인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하는 경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은 위 개별규정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자본거래, 손익거래 방식을 만들어 이를 회피할 것이 예상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자본거래 등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가 주주에 충실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도록 함 (안 제165조의 22)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2024-12-26 발의

공모펀드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소액·분산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나, 최근 ETF,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효용 대비 높은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 비용,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72조제1항 등)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2-27 발의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103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024-12-27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12-23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024-12-26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12-27 발의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파법은 위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할당이 있을 때마다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되어 왔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부과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행정안전위원회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4-12-23 발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 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12-23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46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2024-12-27 발의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2024-12-23 발의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5항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2024-12-24 발의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24조의2제1항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2024-12-12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12-23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이고 피해 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여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등과 상관없이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4.7.)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각각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12-24 발의

최근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양질의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정 외에 공동 생활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새로운 돌봄수요가 생겨나면서 소규모 급식 제공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급식관리 체계는 시설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급식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위생 및 영양 관리 기준이나 지원 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에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7인)

2024-12-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됨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12-24 발의

현행「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 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달함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 6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024-12-24 발의

최근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12-24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수도권부터 시행되어 203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탄소 중립 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국내에서는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등으로 관련 업계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백만톤의 종량제봉투 내 폐플라스틱을 선별·활용하여 재활용 업계의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원 등에 시달리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신·증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등의 사회적·국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2024-12-24 발의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12-24 발의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12-24 발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환경, 교통, 재난·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2024-12-26 발의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안 제49조의20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2024-12-26 발의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48조 및 제80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2024-12-26 발의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12-27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0조제2항·제3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12-27 발의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31(화)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12/30(월) 10:00	- 현안 질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2/30(월) 10:00	-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30(월) 14:00	- 현안 질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12/30(월) 10:00	- 법안 상정, 현안 보고
환노위	전체회의	12/30(월) 14:00	- 법안 등 상정, 현안 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30(월) 16:00	지하철 7호선 급행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노종면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2/31(화) 10:00	대한민국 AI G3 도약, 무엇을 할 것인가? : (특강) 차상 균 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최형두·정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3(금) 14:0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	김윤·남인순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2/30(월)	「현안, 외국에선?」 제97호 발간	국회도서관	
	1/2(목)	「THE 현안」 제39호(2024-39호) 발간		
	1/2(목)	「금주의 서평」 제710호(2025-1호) 발간		
	12/31(화)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2/31(화)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국내 입법 적 시사점’(NARS 현안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12/31(화)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과제’(NARS 입법 정책)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23(월)	「팩트북」 제113호(2024-5호)	국회도서관	
	12/24(화)	「금주의 서평」 제709호(2024-50호)		
	12/23(월)	「202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12/26(목)	「NABO Focus」 제85호		
	12/24(화)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방안’(NARS 입법정책)	국회입법조사처	
	12/26(목)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의 망 비용 분담 논의에 따른 대응 과제’(이슈와 논점)		
	12/23(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7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23~12.2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23(월)	ESG	금융위원회「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12/26(목)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FIFA의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 축구선수 이적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12/26(목)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2/26(목)	금융	금융기관 제재 시 사후적 경합에 따른 감면이 인정됩니다
12/27(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6 (2024년 12월 4째주)
12/27(금)	방송통신 (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 제시
12/27(금)	건설/부동산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2/27(금)	방송통신 (TMT)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 및 대응 필요성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